계약이전시 고용노동부 『규약변경신고』관련 서류 목록

공통서식 (필수)	1	퇴직연금규약 신고서 (법정서식)
	2	퇴직연금규약 변경대비표 (업체 자체 양식 사용가능)
	_	변경전/변경후 퇴직연금 규약 각 1부
	3	(단, 변경전 규약 징구가 어려울 경우 생략가능)

8

필수 서식 (택1)					
근로자에게 <u>불리한</u> (FEX, (기존)타행단독퇴 -> (변경)당행단독토	직연금사업자	근로자에게 <mark>불리하지 않은</mark> 항목 규약 변경 시 [EX, (기존)타행단독퇴직연금사업자 -> (변경)당행추가복수퇴직연금사업자]			
1	2	3 4			
(노동조합 있을 경우)	(노동조합 없을 경우)	(노동조합 있을 경우)	(노동조합 없을 경우)		
1) 근로자합의서	1) 근로자동의서	1) 의견청취서	1) 의견청취서		
(노동조합 있을 경우)	(노동조합 없을 경우)	2) 의견 명부	2) 의견 명부		
-> 당행양식첨부	-> 당행양식첨부				
2) 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 사본1부 (업체징구)	2) 동의 명부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 신고서 []혼합형

※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아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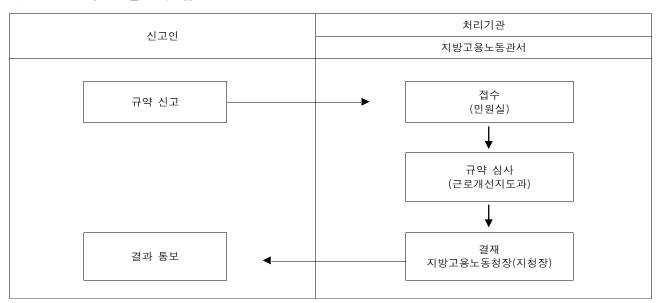
※ 비득의 역상표정을 함포	걱정이어 구시기 마다며, []에터	_ 에ሪ커ㄴ ᆺ에	표시를 합니다.		(立一)	
발급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4일		
	사업명(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업종(주산품)			
신고인	상시 근로자 수	명	노동조합원 수	명		
	주소					
구분		7	 재사항			
평균 재직기간	개략 년					
임금 체계	연봉제 / 호봉(연공급)제	연봉제 / 호봉(연공급)제 / 직무급제 / 기타				
종전 퇴직금제	단수(법정)제 / 누진제 /	단수(법정)제 / 누진제 / 기타				
종전 퇴직금 처리	퇴직금제 유지 / 퇴직연금	퇴직금제 유지 /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에 포함(소급)				
퇴직연금 소급기간	1년 미만 / 1년 ~ 3년 미	1년 미만 / 1년 ~ 3년 미만 / 3년 ~ 6년 미만 / 6년 ~ 10년 미만 / 10년 이상				
퇴직연금 도입 제안자	근로자 / 사용자 / 기타					
퇴직연금 도입 사유	근로복지 / 노무편의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부응 / 퇴직연금	구사업자의 권유	/	
퇴직급여제도 형태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 □「근로자퇴직급여보장 □ 퇴직금제도 [해당 사업(사업장) 적용	법」제6조에 따른	혼합형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및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연금규약을	 신고(신규/변경)합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연	인(사업장 대표)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	용노동청장(지청장) 귀형	₹				
첨부서류2. 근로자의3. 근로자의	급규약(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 및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 변경이 아닌 경우에만 첨부한다)	는 근로자 과반수의 : 우에만 첨부합니다)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	하는 자료(최초 신고	수수료 없음	

작성요령

- 1. "사업명(사업장명)"란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명을 적습니다.
- 2. "대표자 성명"란에는 「사업자등록증」의 대표명을 적습니다.
- 3. "업종(주산품)"란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업태를 적습니다.
- 4. "상시 근로자 수"란에는 '(연 근무인원) ÷ (연 사업장 가동 일수)'를 적습니다.
- 5. "노동조합원 수"란에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조합원 수를 적고, 없는 경우 '0'으로 적습니다.
- 6. "주소"란에는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를 적습니다.
- 7. "평균 재직기간"란에는 '(전체 근로자의 근로기간 합계)÷(전체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 8. "임금 체계"란에는 사업(사업장)의 주된 임금 체계(호봉제/연봉제/직무급제/기타)를 적습니다.
- ※ 직무급제는 개별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 직무등급을 도출하고 직무등급에 기초하여 기본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9. "종전 퇴직금제"란에는 종전에 적용되었던 퇴직금제의 형태(단수제/누진제/기타)를 적습니다.
- 10. "종전 퇴직금 처리"란에는 과거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제도를 유지하는지 또는 과거 근로기간을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에 포함하여 소급하는지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 11. "퇴직연금 소급기간"란의 작성은 다음에 따릅니다.
- 1) 과거 근로기간을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에 포함하여 소급하는 경우에 작성
- 2) 소급기간이 개인별로 다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의 평균 소급기간[(직원별 소급기간 합산)÷(전체 직원 수)]을 적음
- 12. "퇴직급여제도 형태"란에는 신고(신규/변경) 후 해당 사업(사업장)에 적용되는 퇴직급여제도에 모두 표시합니다.
 - ※ 혼합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6조에 따라 사용자가 가입자에 대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함께 설정한 경우를 말하며, 사용자가 두 제도를 모두 설정하고 가입자가 이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퇴직연금규약 변경 대비표

노동부 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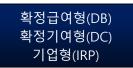
■ 사용자 정보

사 업 자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제 도 유 형		연 락 처	

■ 근로자 대표 정보 –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 작성 생략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	--

변경조항	변경 전	변경 후



근로자합의서 (계약해지 및 계약이전)

1. 제도구분						
제도구분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7	업형 개인	티직계좌
2. 동의내용						
동의내용	□ 계약해지 □ 계약	이전				
- 퇴직연금 기	비약해지					
계약해지일	년 월	일				
계약해지 사유	□ 제도폐지 □ 회사	의 파산/폐업				
· II = · II · II · II · II	□ 기타 ()				
- 퇴직연금 기	계약이전					
계약해지일	년 월	일				
계약이전 사유	□ 퇴직연금사업자변경	□ 제도전환				
	□ 기타 ()				
4700MX X	입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의 동의 내	O 3∥ 31—171 BYY1A∥ (파이고 아메 <i>,</i>	10, - 02 -	10 17.
		노동조합	대표 : _			(인 <u>)</u>
		_		20	년	월 일
[제출서류]						
1. 노동조합 설립	신고 필증 사본	기업명		명 판		거래인감
		_'				
				담당자	확인자	지점장
				담당자	확인자	지점장
				담당자	확인자	지점장



근로자동의서 (계약해지 및 계약이전)

1. 제도구분							
제도구분	□ 확정급여형 퇴직인	년금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ロフ	업형 IRP	
2. 동의내용							
동의내용	□ 계약해지	□ 계약이전	<u>I</u>				
- 퇴직연금 7	약해지						
계약해지일	년	월	일				
계약해지 사유	□ 제도폐지	□ 회사의 ፲	파산/폐업				
. 11 - 12 - 11 - 12 - 11	□ 기타 ()				
- 퇴직연금 계	∥약이전						
계약해지일	년	월	일				
계약이전 사유	□ 퇴직연금사업자변경] 제도전환				
제국적단 자표	□ 기타 ()				
퇴직연금제도 도입	입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의	동의 내용에	이의가 없기에 동	등의의 뜻을	표하고 이에 시		월 일
			기업명		명 판		거래인감
					□ ト□ ト 丁 !	하이기	TIMAL
					담당자	확인자	지점장

동 의 명 부

동의내용 :		
전체 근로자수 :	<u>명</u> (동의 근로자수 :	<u>명</u>)

성명	제도구분	동의(날인)	성명	제도구분	동의(날인)

※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기업명 명 판	거래인감
----------------	------

퇴직연금규약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서

다음 내용으로 퇴직연금 규약을 변경하는데 있어서 규약 제 33조에 의거 그 내용에 관한 별도 의견이 있으면 그 뜻을 기재하고 별도 의견이 없으면 "의견없음" 이라 표한다.

- 다 음 -

퇴직연금사업자(운용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로 주식회사 신한은행 을 추가 선정하기로 한다.

첨 부: 1. 의견명부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 (변경후)

<u>의 견 명 부</u>

번호	부서명	직위	성명	의견
1				의견없음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퇴직연금규약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서

다음 내용으로 퇴직연금 규약을 변경하는데 있어서 규약 제 37조에 의거 그 내용에 관한 별도 의견이 있으면 그 뜻을 기재하고 별도 의견이 없으면 "의견없음" 이라 표한다.

- 다 음 -

퇴직연금사업자(운용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로 주식회사 신한은행 을 추가 선정하기로 한다.

첨 부: 1. 의견명부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 (변경후)

<u>의 견 명 부</u>

번호	부서명	직위	성명	의견
1				의견없음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